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588 호
------	---------

제출년월일 : 1999. 11. 19.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 읍면 기능전환 및 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읍면정원 감축으로 업무의 재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 읍면 위임사무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와 재정비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

2. 주요골자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조정(안 별지)
- 환경녹지과소관 일부위임사무 조정 및 삭제 (안 별지)
 - 청소인부 및 청소차량관리운영중 청소차량관리운영 삭제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삭제
 - 오수정화조 및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군 허가·신고분)삭제
 -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간이축산폐수정화조설치(군 허가·신고분)삭제
- 수산과소관 위임사무 삭제(안 별지)
 - 신고어업(시행령 제33조 제1항 1~3호에 한함)
- 도시과소관 위임사무 삭제(안 별지)
 - 건축신고
 - 무허가 수도 단속
 - 개인급수전 설치허가 및 상수도 유지관리
 - 가설건축물 신고
 - 토지형질변경허가(농지전용신고, 건축신고범위내)
- 보건소소관 일부위임사무 삭제(안 별지)
 - 음식영업(폐업, 재개업)허가 및 관련 사항
 - 집단급식소 신고사항
 - 대마취급자 허가

3. 관련근거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

4. 본 문 : 불 임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권 한 위 입 사 항

소 관 별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범위	비 요
자 치 행정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속공무원에 대한 당해 읍면 내 전보 2. 소속직원의 전·출입 재청 3. 소속직원의 출장 명령 4. 소속직원의 당직명령 5. 소속직원의 휴가처리 6. 소속직원의 사무인계인수 7. 문서의 보존 및 폐기 	<p>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p> <p>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8조 고성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7조</p> <p>고성군지방공무원규칙 제1조 고성군지방공무원규칙 제8조 사무관리규정 제28조 및 제31조</p>	
재무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세징수 2.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3. 관내공공시설과 재산관리 4. 군·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p>고성군세조례 제6조</p> <p>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p>	
민 원 봉사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대장 기재(말소)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2.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정정)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인계한 대장에 한함 	<p>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 등에관한규칙 제2조 및 제9조</p> <p>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관한규칙제7조 및 제8조</p>	
사 회 복지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보호신청(변경) 및 조사 2.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관리 3. 매장, 화장, 개장신고 4.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5. 장애인 검진의회 	<p>생활보호법 제18조 및 제23조</p> <p>생활보호법시행규칙 제16조</p> <p>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p> <p>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p> <p>장애인복지법 제3조</p>	
환 경 녹지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인부관리 2. 공중화장실 지도, 점검(도·군립공원, 공공체육시설, 국민관광지 제외) 3. 오수정화조 및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군허가·신고 대상의 건축물) 4.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군허가·신고대상 외 건축물) 5. 입산금지 	<p>고성군청소종사원복무규칙 제13조</p> <p>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p> <p>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건축법제8조 및 제9조</p> <p>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4항및제26조, 제33조제2항, 건축법 제8조및제9조</p> <p>산림법 제98조, 제125조</p>	

소 관 별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범위	비 고
건설과	1.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일시점용허가 2. 소하천 범용등에 관한 사무중 다음의 권한 가. 경작을 위한 토지의 점사용허가 나.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	도로법 제40조 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보건소	1. 이·미용업소 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 2.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3. 여인숙 영업신고 4. 여인숙 휴·폐업신고 5. 이·미용업 영업신고 6. 이·미용업 휴·폐업신고 7. 식품영업관련 출입·검사·수거등(읍면신고분에 한함) 8. 공중위생업소 출입·검사 9. 식용얼음 판매신고 10. 우유류 판매업 신고 11. 영업자 지위승계(읍면신고분에 한함) 12.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읍면신고분에 한함) 13.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청문회 관련 사항(읍면신고분에 한함) 14. 세탁업영업신고관리 15. 대마재배자 보고	공중위생법 제10조제2항 식품위생법 제22조 공중위생법 제4조제2항 공중위생법 제10조제2항 공중위생법 제4조제2항 공중위생법 제10조제2항 식품위생법 제17조 공중위생법 제20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5조 및 공중위생법 제8조 식품위생법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공중위생법 제23조, 제25조 식품위생법 제64조 및 공중위생법 제24조 공중위생법 제4조 대마관리법 제5조	
농업 기술센터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권한 위임 사항 정비 대비표

소관별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범위	위임 여부	사유(현실태, 개선방안, 기타의견)
행정과	1. 소속공무원에 대한 당해 읍면내 전보 2. 소속공무원 전·출입 제청 3. 소속직원의 출장명령 4. 소속직원의 당직명령 5. 소속직원의 휴가 처리 6. 소속직원의 사무인수인계 7. 문서보존 및 폐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지방공무원 제6조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8조 고성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7조 고성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제4조 고성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제8조 사무관리규정 제28조 및 제31조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위임	1.~7.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처리사항 등으로 읍면의 직제에 따라 위임함이 타당 ※자치행정과로 명칭변경
세무회계과	1. 군세징수 2.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3. 관내 공공시설과 재산관리 4. 군·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고성군세조례 제6조 도로교통법 제115의 2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위임 위임 위임 위임	1~2.세수의 확보와 현황 파악 및 체납자 독려를 위하여 위임함이 타당 (읍면기능전환시 재검토사항) 3. 읍면시설에 대한 일반관리로 위임함이 타당 (읍면 기능전환시 재검토사항) 4. 주민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위하여 위임함이 타당 ※재무과로 명칭변경
민원봉사과	1. 건축물대장 기재(말소)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2.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정정)신청서접수 및 현지조사 -인제한 대장에 한함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조 및 제9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및 제8조	위임 위임	1.~2. 주민편의를 위하여 읍면위임함이 타당 (읍면 기능전환시 재검토 사항)

소 관 별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범위	위임 여부	사유(현실태, 개선방안, 기타의견)
사 회 복지과	1. 생활보호신청(변경) 및 조사 2.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관리 3. 매장, 화장, 개장신고 4. 이·미용업소 영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5.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6. 음식영업(폐업, 재개업)허가 7. 여인숙 영업신고 8. 여인숙 휴·폐업신고 9. 이·미용업신고 10. 이·미용업 휴·폐업신고 11. 식품영업관련 출입, 검사, 수거등 12. 공중위생업소 출입, 검사 13. 식용얼음 판매신고 14. 집단급식소 신고 15. 우유류 판매업 신고 16. 영업자 지위승계 17.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 정처분에 관한사항(읍면 신고분에 한함) 18.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청 문에 관한 사항(읍면 신고 분에 한함) 19. 세탁영업신고 관리 20.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21. 장애인 등록신청	생활보호법 제18조 및 제23조 생활보호법시행규칙 제16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공중위생법 제10조제2항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2조 공중위생법 제4조제2항 공중위생법 제10조 제2항 공중위생법 제4조제2항 공중위생법 제10조제2항 식품위생법 제17조 공중위생법 제20조 공중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5조 및 공중위생법 제8조 식품위생법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공중위생법 제23조, 제25조 식품위생법 제64조 및 공중위생 법 제24조 공중위생법 제4조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위임 폐지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위임 폐지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위임 변경	위임사항 : 신고등 경미한 사항으로 주민편의 도모 측면에서 위임함이 타당 (읍면기능전환 시 재검토 사항) 폐지사항 : 청문등에 대한 사항으로 허가와 함께 일괄 폐지. 음식점영업과 관련 자주 발 생하는 청문등에 대하여 전문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 ※ 위생업무 소관 정정(보건소)

소 관 별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범위	위임 여부	사유(현실태, 개선방안, 기타의견)
환경 녹지과	1. 인분비료 사용금지 지도단속 2. 청소인부 및 청소차량관리운영 3.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4. 공중화장실 지도,점검(도·군립공원,공공체육시설, 국민관광지 제외) 5. 오수정화조 및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군허가 대상의 건축물) 6.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군허가대상의 건축물) 7. 입산금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 고성군환경미화종사원복무규칙제1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4항 및 제26조, 제33조제2항,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산림법 제98조, 제125조	폐지 변경 폐지 위임 변경 변경 위임	1. 동법 제20조는 분뇨 및 축산폐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재활용신고를 의무화한 규정으로 대상 분뇨 및 축산폐수가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환경부서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위임불가 2.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청소차량관리는 폐지하고 가로청소업은 위탁되지 않음으로 위임 3. 민간위탁으로 위임 불가 4. 일상적인 지도·점검사항으로 위임함이 타당 5. 건축신고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 민원처리 및 정화조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본청 처리가 타당하므로 (군허가·신고대상의 건축물)만 위임 6. 상동 “간이축산폐수정화조설치” 용어삭제 7. 일반적인 사항으로 업무의 효율면에서 위임함이 타당
농업 기술센터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위임	처리건수가 많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위임함이 타당(읍면 기능전환시 재검토사항)
수 산 과	신고어업(시행령 제33조 제1항 1~3호에 한함)	수산업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폐지	수산업무의 본청이관으로 폐지함이 타당

소 관 별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범위	위임 여부	사유(현실태, 개선방안, 기타의견)
건설과	1.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일시 점용허가 2. 소하천 점용등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경작을 위한 토지의 점 사용 허가 나.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	도로법 제40조 제1항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위임 위임	일부사무에 대한 위임으로 업무효율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위임함이 타당(읍면기능전환시 재검토사항)
도시과	1. 건축신고 2. 무허가 수도단속 3. 개인급수전 설치허가 및 상수도 유지관리 4. 가설건축물 신고 6. 토지형질변경허가(농지전용 신고, 건축신고 범위내)	건축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고성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 고성군수도급수조례 제6조 건축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2항 건축법 제9조, 도시계획법 제4조, 농지법 제37조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1.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신고업무 본청이관 2~3, 상하수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폐지 1,4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신고는 폐지하고 건축물 관련 지도 업무만 수행 6.복합민원 성격으로 업무의 전문성측면에서 본청에서 처리함이 타당
보건소	1. 대마취급자 허가 2. 대마재배자 보고	대마관리법 제5조 제1항 대마관리법 제5조	폐지 위임	1. 최초 허가에 있어서는 본청처리가 타당 2. 매년 발생하는 재배자 보고는 위임함이 타당